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4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위성곤 · 조계원 · 이학영
윤준병 · 김기표 · 최혁진
임호선 · 정진욱 · 박희승
이개호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거나 제29조제1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u>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u> ③·④ (생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거나 제29조제1항제1호부터</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제66조(과태료)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